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 조건 등 사전 제공〉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76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1
3. 회부연월일 : 2025.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준용하여 교육훈련 중인 현장실습생이 직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우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고등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법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3년 3월 30일 국회는 현행법이 기존에 「근로기준법」에서 준용하던 4가지 규정 외에도 강제근로·폭행·중간착취·직장내괴롭힘·기능습득과 무관한 업무 등을 금지하는 규정 8가지를 추가로 준용하도록 하여 산업체에 파견된 현장실습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실습 중인 학생만을 보호하는 사후적·대응적 보호제도에 그치지 않고, 산업체를 연계(매칭)하는 단계부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전적·예방적 보호제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다수의 현행법상 조항이 훈련기관의 권한과 계약절차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실습의 주체가 될 학생이 훈련기관으로부터 산업체를 소개받는 단계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 희생되는 일을 방지할 선제적 보호장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학교가 개별 산업체와 현장실습의 내용·실습조건을 먼저 협의한 후 학생에게는 사후적으로 계약체결의 가부만을 선택하도록 연계(매칭)하는 경우 개별 산업체 선택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제한되며, 그 연계 과정에서도 학교가 학생에게 현장실습의 내용·실습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학생은 현장실습계약의 주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연계를 수락하게 되는 ‘깜깜이 실습계약’이 발생함. 이로 인해 학생이 예측하지 못한 실습조건에 직면하게 되고, 이후 실습조건을 버티지 못하거나 실습조건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는 현상의 원인이 됨. 지난 2022년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자들의 중도포기율은 무려 24.1%에 달했음.

이에 훈련기관(학교 등)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학생)에게 산업체를 연계하려는 시점(제안하는 시점)에 업무의 내용 및 수당, 실습시간 등의 실습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습조건이 부적절한 산업체로의 파견은 훈련생이 계약체결 단계가 아니라 매칭 단계에서도 당연히 거

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체를 연계하려는 시점에 업무의 내용 및 수당, 실습시간 등의 실습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습조건이 부적절한 산업체로의 파견은 훈련생이 계약 체결 단계가 아니라 매칭 단계에서도 당연히 거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설명을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하려는 산업체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현장실습 조건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직업교육훈련협의회도 또한 같다.</u>
<u><신설></u>	제8조의2(현장실습산업체의 연계 등) ① <u>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를 직업교육훈련생(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계하려는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업무의 내용, 수당, 현장실습 시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u>

현행	개정안
	<u>정하는 현장실습 조건을 미리 설명한 후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연계를 수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설명을 들은 직업교육훈련생은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연계를 거절하고 다른 현장실습산업체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조건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직업교육훈련법”이라 함) 제2조1)는 “현장실습”을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법 제7조2)는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8조3)는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 2) **직업교육훈련법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직업교육훈련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제1항)하여 자신이 근무하게 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생의 근무환경을 미리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제3항)을 통해,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제4항)를 두고 있음.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공통매뉴얼(운영기준)」(이하 “매뉴얼”이라 함)을 마련하였고, 직업계고 직업교육훈련생들은 매뉴얼에 정해진 바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소개받는 단계부터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실습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⁴⁾

람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한국장학재단, 2025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공통 매뉴얼(학교용), p27~p.33. 2025.4.30.

“학교(교사)는 우수기업 및 강소기업 DB, 중앙취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발굴하고, 현장실습산업체 방문과 함께 기업형태, 업종, 4대 보험* 가입 여부, 유해기업 사업장 여부 등의 기업 기본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업은 학교에 기업의 기본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전담노무사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기업을 지원함.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하며, 현장실습 기업은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함.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학교와 노무사의 역할 >

구 분		학 교	노무사
현장실습 전	업무	· 현장실습 가능 기업 발굴 · 대상 기업 확정	· 기업 방문 현장실사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참석 · 현장실습 직전 특별교육
	점검대상	·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의사 확인 ·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취득,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기업 근무환경 및 여건 관련 적격성 판단 · 기업의 산업 안전, 권익보장 여부 점검
	문서작성	· 산업체 방문 조사 카드	·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 · 산업안전점검결과표(공통·세부)
현장실습 중	업무	· 순회지도 · 상시 모니터링	· 기업 코칭(참여·선도기업)
	점검대상	· 학생 근태와 건강 상태 · 기업(현장교사)의 교육 협력	· 현장실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 기업·현장실습생 만족도 조사
	문서작성	·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 현장실습 기업코칭 점검결과표 · 산업안전점검결과표(유해 업종만)

자료: 교육부

이렇듯 현행법령과 매뉴얼은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학교와 학교전담노무사 등이 현장실습산업체 선정하기 전에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선정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생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전 단계부터 현장실습의 내용·실습조건과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유의사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간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2003년 이래로 수 차례에 걸쳐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해 개선방안 및 보완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사건,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건 등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노동착취, 인격침해 등의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고,

<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권익침해 현황 >

연도	지도점검(순회지도 포함) 결과										안전사고 건수			계
	지도점검	지도점검 평균횟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 업무	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무(실습) 기간 초과	야간(휴일) 근무실시	계	산재 처리	산재 미처리	계	안전사고+ 권익침해
2016	77,915	1.2	5(5%)	3(3%)	14(13%)	17(16%)	12(11%)	55(52%)	-	106	16	4	20	126
2017	84,817	1.8	1(2%)	0(0%)	3(10%)	4(13%)	15(47%)	9(28%)	-	32	15	5	20	52
2018	39,801	1.8	0	0	0	0	1(25%)	2(50%)	1(25%)	4	3	0	3	7
2019	45,727	1.7	0	1(2%)	1(2%)	6(13%)	8(18%)	23(51%)	6(13%)	45	6	2	8	53
2020	50,576	1.9	0	4(15%)	0	5(19%)	9(35%)	5(19%)	3(12%)	26	5	1	6	32
2021	64,699	2.3	0	1(3.6%)	0	8(28.6%)	5(17.9%)	12(42.9%)	2(7.1%)	28	6	3	9	37
2022	35,797	1.8	0	6(27.2%)	0	5(22.7%)	4(18.1%)	5(22.7%)	2(9%)	22	7	16	23	45
2023	34,183	2.0	0	1(6.6%)	3(20%)	1(6.6%)	6(40%)	3(20%)	1(6.6%)	15	12	13	25	40

자료: 교육부

현장실습 지도·점검과정에서 권익침해 건수도 상당수 확인되는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⁵⁾이라는 점 때문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현장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아직은 미성년자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선제적·예방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

5) 강문식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pp3~4, 국가인권위원회, 2022.12.6.

이며, 그 입법 취지에 공감이 되는 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이 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인권침해 등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이미 수행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볼 수 있음.

참고로, 최근 동법에 개정(2025.3.18.)⁶⁾에 따라 제8조의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향후 동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 조를 제8조의3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등 관련한 메뉴얼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실습계약 체결 전부터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학생),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간 이루어지므로 개정안의 정보제공 요청권자에서 교육부장관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고,

안 제8조의2 현장실습 조건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0786호, 시행 2025.9.19.]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생 략) ⑤ <u>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은</u> 제8조의2에 따른 설명을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하려는 산업체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현장실습 조건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직업교육훈련협의회도 또한 같다.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u>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u> ----- ----- ----- ----- ----- -----.
제8조의2(현장실습산업체의 연계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조건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제8조의2(현장실습산업체의 연계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u>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으로</u> ----.

관계 기관인 경북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일부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관계 기관 의견 >

◦ (경북교육청) 일부수정

-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현장실습 참여의사가 없는 현장실습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요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음
-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사전에 기업체 훈련 직무 내용, 현장실습 참여방법, 협약체결 등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현장실습 참여 동의서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복교 사유 발생 시 학교로 복교하여 복교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른 산업체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법조항의 문구를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면 학교 현장에서 현장실습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 및 역량 강화에 더 힘쓸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93